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3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2.

발 의 자:김선민·신장식·조 국

김준형 • 이해민 • 김재원

박은정 · 차규근 · 강경숙

정춘생 • 황운하 • 서왕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%, 소득대체율은 42%로,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따라,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%로, 소득대체율을 50%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.

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,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.

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.5%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%와 50%가 되게 하려는 것임(안 제 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##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천200을"을 "1천500을"로 한다.

제88조제3항 중 "1천분의 45"를 "1천분의 65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1천분의 90"을 "1천분의 130"으로 한다.
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7년까지"를 "2024년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)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각 연 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1. 2025년은 1천분의 1천260

- 2. 2026년은 1천분의 1천275
- 3. 2027년은 1천분의 1천290
- 4. 2028년은 1천분의 1천305
- 5. 2029년은 1천분의 1천320
- 6. 2030년은 1천분의 1천335
- 7. 2031년은 1천분의 1천350
- 8. 2032년은 1천분의 1천365
- 9. 2033년은 1천분의 1천380
- 10. 2034년은 1천분의 1천395
- 11. 2035년은 1천분의 1천410
- 12. 2036년은 1천분의 1천425
- 13. 2037년은 1천분의 1천440
- 14. 2038년은 1천분의 1천455
- 15. 2039년은 1천분의 1천470
- 16. 2040년은 1천분의 1천485
- 제3조(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) 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 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 - 1. 2025년은 1만분의 450
  - 2. 2026년은 1만분의 475

- 3. 2027년은 1만분의 500
- 4. 2028년은 1만분의 525
- 5. 2029년은 1만분의 550
- 6. 2030년은 1만분의 575
- 7. 2031년은 1만분의 600
- 8. 2032년은 1만분의 625
- ②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2025년은 1천분의 90
- 2. 2026년은 1천분의 95
- 3. 2027년은 1천분의 100
- 4. 2028년은 1천분의 105
- 5. 2029년은 1천분의 110
- 6. 2030년은 1천분의 115
- 7. 2031년은 1천분의 120
- 8. 2032년은 1천분의 125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기본연금액) ① 수급권자	제51조(기본연금액) ①
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	
금액을 합한 금액에 $1$ 천분의 $\underline{1}$	<u>1</u>
<u>천200을</u> 곱한 금액으로 한다.	천500을
다만,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	
하면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	
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	
으로 계산한다)마다 본문에 따	
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	
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.	<u>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88조(연금보험료의 부과・징수	제88조(연금보험료의 부과・징수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	3
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	
인이,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	
부담하되, 그 금액은 각각 기준	
소득월액의 <u>1천분의 45</u> 에 해당	<u>1천분의 65</u>
하는 금액으로 한다.	
④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	4
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	
는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또	

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 담하되,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 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.

### ⑤ (생 략)
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

- 1. ~ 17. (생 략) 18.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.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
- <u>20.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</u>

<u>1천분의 130</u>	
⑤ (현행과 같음)	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	전부
개정법률 부칙	
제20조(기본연금액 산정에	대한
적용례)202	4년까
ス]	
1. ~ 17. (현행과 같음)	
<u>&lt;삭 제&gt;</u>	
<u>&lt;삭 제&gt;</u>	
<삭 제>	